

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

제정: 2018년 10월 15일

개정: 2021년 6월 30일

제1조 (목적)

본 기준 및 절차는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, 법 제 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다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: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마. 성과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
2. 수수료
 - 가. 판매수수료: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,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됨.
- 다. 투자자문 기본수수료 :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로,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
- 라. 투자자문 성과수수료 : 투자자문 기본수수료외에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
- 마.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대상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로,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
- 바.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: 투자일임 기본수수료외에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

제4조 (수수료 부과 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 절차)

-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제6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8조 (협회에 대한 통보)

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효력이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